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15
----------	------

제출일자 : 2026. 5. 25.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를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추가하고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의 변경사항('17. 3. 21. 일부개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조항 추가(안 제3조)
- 나. 상위 법률 변경 사항 반영(안 제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격 요건 추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1)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6. 2. 20. ~ 3. 13.)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설치 및 기능)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7. 8. (생략)</p> <p>제5조(구성) ① (생략)</p> <p>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군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군수가 임명하는 군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p>	<p>제3조(설치 및 기능)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u>」 제11조에 따른 <u>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u></p> <p>8. 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p> <p>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복지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복지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따른다.